



가정통신문

(교훈 : **맑고 바르고 힘차게**)

제2024-193호
발행처: 이리동산초등학교
교무실: 063) 857-2230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안녕하세요, 예비 학부모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들의 입학 준비를 위해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을 2025년 1월 2일(목)에 실시 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반드시 자녀를 동반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소집 일시** : 2025. 1. 2. (목) 14:00 ~ 16:00

2. **예비소집 장소** : 이리동산초등학교 별관 2층 1학년 교실

3. **참석대상** : 2025학년도 신입생과 보호자

※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와 입학할 자녀가 함께 학교에 방문해야 합니다.

4. 예비소집 당일 제출서류

가. 취학통지서 (이리동산초 배정)

나.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원서

다. 수의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

라.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

- <붙임1> :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희망'에 체크하여 제출

- <붙임2> : 희망자만 제출

마. 어린이 안심등교 서비스 신청서 (희망자만 제출)

5. 협조사항

가. 학교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안전을 위해 도보로 함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입생 제출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와 함께 각 가정으로 배부되므로 미리 가정에서 작성**해 주시고,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이리동산초등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예비소집일에 못 오실 경우, 사전에 교무실(063-857-223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신청일이 1.2~1.3.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예비소집일 운영 날짜 이전에 연락바랍니다.)

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동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비소집일 운영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 뒷면에 있는 '예비 학부모 안내자료'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6.

이리동산초등학교장

예비 학부모 유의사항 안내자료

-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에 따라, 미취학 시 소재·안전 파악을 위한 학교·읍면동·교육지원청의 연락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락 두절 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 (예비소집 참석)**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필히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